

① 조례공포안 :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

가 시장발의 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이송한 조례공포안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」
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

[안건번호 제〇호]

안건번호 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법무담당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의회의 의안번호 아님

□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
공포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.

○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→ 시장제출안(원안)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

- 본 조례의 개정안에는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
이용료를 신설하고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에서
통행이 금지된 ‘바퀴가 있는 동력장치’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도록
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**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** → 시의회에서 수정된 내용 설명

- 전기자전거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
-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.

○ **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,** → 시의회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-